



2024년 수산분야 직접피해보전제도

# Q&A 사례집



2024년 수산분야 직접피해보전제도

# Q&A 사례집



# CONTENTS

|   |                    |    |
|---|--------------------|----|
| 1 | 직불금 신청 관련 사항       | 4  |
| 2 | 지급대상자 관련 사항        | 6  |
| 3 | 신청 및 지원 기준         | 8  |
| 4 | 직불금 산출방법           | 10 |
| 5 | 증빙자료 관련 사항         | 16 |
| 6 | 행정처분 관련 사항         | 19 |
| 7 | 지자체 담당자 확인 사항      | 21 |
| 8 | 2024년 지원대상품목별 주요사항 | 22 |

# 1. 직불금 신청 관련 사항



## ①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 ✓ 2024년 지원대상품목은 **가리비, 전복 2개 품목**으로, 지원대상품목은 발동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 ② 2024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 '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23년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직불금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합니다.

- ① 어업인등(어업경영자,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어업에 고용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②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피해품목 | 대상 FTA          | 피해품목 | 대상 FTA                 |
|------|-----------------|------|------------------------|
| 가리비  | '22.02.01(RCEP) | 전복   | '23.01.01(한-인도네시아 FTA) |

-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④ 2023년 지원대상품목(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2023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자
- ⑤ 2023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③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 ✓ 2024년도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6일입니다.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사업연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지급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인정되는지?

✓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 관할 시·군·구청 \*에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신청 어업인의 시·군·구청 거리가 멀거나, 신청자가 많은 지역은 필요 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읍·면·동에 서류 제출 및 신청 가능

⑥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의 관할 시·군·구'란,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등록지, 선적항, 어업허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 “선적항” 기준입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어선법」 제13조

⑦ 직불금 신청 방법에서 '지원대상품목이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인이 각각 다른 시·군·구에 어업허가 또는 어선 등록을 한 경우, 그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⑧ 2023년까지 A지역에서 생산하던 어업인이 현재(2024년) B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A와 B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2023년의 허가 및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관내 생산사실 확인서를 A지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지급대상자 관련 사항



⑨ 지원대상품목을 과거에 생산했거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어업인은 모두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23년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직불금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합니다.

- ① 어업인등(어업경영자,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어업에 고용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② 피해품목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피해품목 | 대상 FTA        | 피해품목 | 대상 FTA               |
|------|---------------|------|----------------------|
| 가리비  | '22.2.1(RCEP) | 전복   | '23.1.1(한·인도네시아 FTA) |

-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④ 2024년도 지원대상품목(가리비, 전복 2개 품목)을 2023년에 생산하여 판매한 자
- ⑤ 2023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원양산업발전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⑩ 2023년까지 가리비 생산 어업인 이었으나, 2024년에 기존의 가리비 생산 어업권을 반납하고 다른 품목의 어업권을 취득한 어업인, 또는 2024년 어업권을 상실하여 현재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지?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하였고 2023년에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현재는 어업권을 상실하였으나, 2023년 기준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 포함)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⑪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23년까지 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던 어업인이 '24년에 어업권을 이전한 경우, 본래 소유자(허가자)와 변경된 소유자(허가자) 중 지급신청자는 누가 되는지?

✓ '23년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것으로서, 본래 소유자는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된 소유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⑫ 지원대상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자와 2023년도 생산 및 판매자가 다르지만, 가족인 경우(부인 또는 자녀 등)에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 ✓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단, 부부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부부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의 3)에 2023년도 생산 및 판매자와 동일인의 이름으로 생산 사실을 어촌계장 또는 생산지 소재지 주민 2인의 서명을 받은 서류 첨부
  - \* 부부의 경우에도 어업권은 동일인의 명의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며, 발효일 이후 한동안 생산하지 않다가 2023년에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 ✓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과 2023년 생산 실적이 있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⑭ 어업인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한 어업인(어업경영인)이 신청대상자로서, 피고용인인 어업종사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⑮ 수협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 수협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⑯ 어촌계 소유 면허 행사계약자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어촌계 면허 행사계약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⑰ 본인 소유의 어장(어선)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 및 임대한 경우에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한 어업인(어업경영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임차인은 신청 가능하며(임대인은 신청 불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대차 관계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 임대차 계약서, 「수산업법」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사항 등 증빙
  - (예시) 협정일 이전 어업권 없이 A 양식장을 임대하여 생산하였는데, A 양식장은 군청의 소유지(공유수면)로 제 3자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인 경우
  - ⇒ 이러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가 불가능하며, 신청자격 제한

### 3. 신청 및 지원 기준



⑱ 일반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혹은 법인명 중 어떤 명의로 신청되어야 하는지?

✓ 일반법인의 경우 개인 어업인과 동일한 지급액 상한을 적용받으며(3,500만 원), 대표자명 혹은 법인명 명의 모두 무관합니다.

✓ 그러나 동일인의 명의로 어업권, 생산·판매사실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시) FTA 협정발효일 이전과 2023년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업권과 생산·판매사실 증빙 상의 동일한 명의로 증빙할 수 있도록 법인명으로 신청가능

⑲ 협정발효일 이전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여 어업활동을 하였으나, 발효일 이후에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지급 대상인지?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이 확인되고, 2023년 판매사실 증빙이 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 2021년 10월 가리비 양식 면허를 취득하여 조업 활동을 하였으나, 생산물(가리비)을

2022년 2월 이후(RCEP 2022.2.1.) 판매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의 3 서식)를 통해 생산증빙 같음 가능

⑳ FTA 협정발효일 이전 위판실적 증빙은 가능하지만, FTA 협정발효일 이전 어업권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인지?

✓ 생산·판매 증빙이 가능하더라도 어업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 제한됩니다.

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어선·사업장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사망한 어업인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수협이 전산출력물 등)하는 서류 첨부



㉔ FTA 협정발효일 이전 A어선(어장)으로 생산, 2023년 A어선(어장)을 판매하고 2024년 새로운 B어선(어장)에서 생산(양식)한 경우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B 어선(어장)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면허 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산정됩니다.

㉕ 1개 어선(어장)으로 2개 품목 이상의 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동일 어선(어장)에 대해 복수로 직불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 ✓ 복수로 지급되며, 각각의 품목에 대해 별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㉖ 가리비·전복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권 중 어떤 어업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 ✓ 가리비나 전복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권인 패류양식(수하식, 가두리 등), 복합양식, 협동양식, 육상해수양식 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산 및 판매 증빙자료에서 가리비나 전복의 품목명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㉗ 1명의 어업인 또는 1개 회사가 여러 개의 어선(어장)을 보유한 경우, 개별 어선(어장)별로 신청하는 것인지?

- ✓ 어선(어장)별이 아닌, 어업인등(어업인·어업법인)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직불금은 어선의 톤수 혹은 어장의 면적을 합산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㉘ 1개의 양식장에서 어촌계 행사계약 혹은 지분권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 양식장을 공동 소유(지분권, 행사계약 등)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지분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업권(면허 및 허가)이나 행사계약서 상의 내용이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시) 전체 5ha 양식장에서, 1ha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가리비를 생산하고 있는 신청인의 경우, 1ha에 대해 직불금 신청 가능

㉙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2023년 전량 폐사하여 판매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 ✓ 최소 한 건이라도 판매증빙이 가능해야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2023년도 가격하락의 피해에 대한 보전이므로 전량 폐사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4. 직불금 산출방법



㉘ 어업인이 수령하게 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출하며, 구체적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직불금액} = \text{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textcircled{1}} \times \text{지급단가}^{\textcircled{2}} \times \text{조정계수}^{\textcircled{3}}$$

①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통계법」에 따른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2024년 기준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 양식어업 1)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실제 양식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한 면적
- 양식어업 2) 양식어업 생산자가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한 경우, 증빙한 생산량\*\*을 인정

\* 사실관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수협 위판 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내역서, 택배영수증, 유통·가공업체와의 납품장부, 전자 세금계산서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은 제외)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과 물량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해당연도 직전 5년(2018~2022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②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23년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23년 기준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 90%

③ 조정계수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 (=수입기여도\*)

\* 가격 하락의 여러 요인 중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

㉨ 2024년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량, 지급단가, 조정계수는 어떻게 되고, 어업인이 실제 수령하는 직불금은 어느 정도인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별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는 아래와 같고, 해당 품목별·업종별 단위 면적당(또는 어선톤수) 평균생산량이 적용되어 직불금이 산정됩니다.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23년도 평균가격) × 95%

\* kg당 지급액 = 지급단가×조정계수

| 품목별 | 지급단가(원)<br>(A) | 조정계수(%)<br>(B) | kg당 지급액(원/kg)<br>(A × B) |
|-----|----------------|----------------|--------------------------|
| 가리비 | 1,059          | 11.7           | 123.92                   |
| 전복  | 4,797          | 6.4            | 308.47                   |

✓ 어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은 어업인이 보유한 어선의 톤수(또는 양식장 면적)와 면허·허가·신고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단위 면적당 평균생산량 값은 예를 들기 위해 임의 설정하였음〉

▶ 'A' 지역에서 1ha 규모의 양식어업으로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은 247,000원 수령

|         |   |                |   |            |   |          |
|---------|---|----------------|---|------------|---|----------|
| 1ha     | × | 2,000kg/ha     | × | 123.92원/kg | = | 247,000원 |
| (양식 면적) |   | (단위 면적당 평균생산량) |   | (kg당 지급액)  |   |          |

▶ 'B' 지역에서 1ha 규모의 양식어업으로 전복을 생산한 어업인은 616,000원 수령

|         |   |                |   |            |   |          |
|---------|---|----------------|---|------------|---|----------|
| 1ha     | × | 2,000kg/ha     | × | 308.47원/kg | = | 616,000원 |
| (양식 면적) |   | (단위 면적당 평균생산량) |   | (kg당 지급액)  |   |          |

\* 천 원 미만 단위 절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얼마인지?

✓ 어업인은 개인당 3,500만원까지, 어업법인은 법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 일반회사법인도 어업법인에 포함되어 최대 5,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만 해당되며, 일반회사법인은 '어업인'에 해당되어 직불금 상한액 3,500만원이 적용됩니다.

③② 어선(허가) 혹은 어장(면허)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을 보유한 다수 어업인에게 각각 최대 3,500만원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지?

- ✓ 어선(허가) 혹은 어장(면허)을 공동 소유한 경우, 해당 지분자의 직불금 지급액의 합은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개별 어업자가 다수의 어선(허가) 혹은 어장(면허)을 소유하거나, 다수 어선(허가) 혹은 어장(면허)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어업인의 직불금 지급액의 합은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③ 정치망, 기타정치성구획어업의 경우 면적 혹은 톤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지?

- ✓ 정치망과 기타정치성구획어업은 어법의 특성 상 구역을 특정하여 조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③④ 신청인의 양식면적은 허가 및 면허 상에 기재된 총 면적 또는 수면적, 시설면적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 ✓ 지원금 산출에 활용되는 면적은 허가 및 면허 상의 양식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⑤ 2024년 직불금 신청시(현재)의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이 2023년(과거)의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과 다를 경우, 또는 2024년 어업권을 상실한 경우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 2023년도 가격 하락의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당시의 어업 면허·허가·신고 사항(어선통수, 어장면적)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아울러, 어선통수·어장면적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지급
- ✓ 또한, 2023년에 어업권이 변경되었거나 어업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㉞ 2023년 중 허가 또는 면허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불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2023년 허가 및 면허 상의 변동 사항(업종, 톤수, 면적 등)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산출합니다.

\* 어업권의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예시) 2023년 1~6월 2ha 어장 → 7~12월 1ha 어장으로 변경 (품종 동일)

⇒ 6월까지의 2ha 기준, 7월 이후 1ha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예시) 2023년 1~6월 4톤 어선 → 7~12월 5톤 어선으로 변경 (업종 동일)

⇒ 6월까지의 4톤 기준, 7월 이후 5톤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예시) 2023년 1~6월 연안자망어업 → 7~12월 연안선망어업

⇒ 6월까지의 연안자망어업의 평균생산량 기준, 7월 이후 연안선망어업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㉟ 평균생산량이 “0”이거나, 도출되지 않는 업종·지역의 경우 지급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 어업인이 본인의 평균생산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2018~2022)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증빙하면 이를 인정 가능합니다.(상세 방법은 ㉞ 참조)

㊱ 양식어업의 평균생산량이 도출되어 있으나 양식 생산자가 직접 증빙 가능한 경우, 평균생산량이 아닌 증빙된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지?

✓ 양식어업의 경우, 어업인 등이 본인 생산량을 직접 증빙할 수 있다면 증빙된 물량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어선어업 제외).

✓ 어업인이 본인의 평균생산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2018~2022)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증빙하면 이를 인정 가능합니다.(상세 방법은 ㉞ 참조)

㉔ 어업인 등이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 양식어업 생산자의 경우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 가능한 경우, 증빙한 생산량이 인정됩니다.
- ✓ 또한,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이 '0'으로 산정된 경우에 본인이 직전 5개년의 생산량을 증빙 가능한 경우 생산량이 인정됩니다.
- ✓ 직전 5년(2018~2022년) 생산량을 연도별로 증빙하는 방법으로는 어업인 등이 본인의 판매영수증\* 증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수협 위판 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내역서, 택배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보관증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의 품목명과 물량이 정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 어업인 등이 본인의 평균생산량을 판매영수증을 통해 증빙하는 경우, 직전 5년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로 품목명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생산량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평균생산량은 직전 5개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예시 1: 산출 가능한 경우) 양식어업권 보유 어업인 A품목에 대한 수협 위판 영수증으로 직전 5개년 판매량 증빙

- 지급 대상 품목명(A) 확인 가능, 해당 품목의 연도별 생산량(중량) 확인 가능
- 연도별 생산량 : ('18) 1,000kg, ('19) 3,000kg, ('20) 4,000kg, ('21) 2,500kg, ('22) 3,500kg
- 평균 생산량 : 3,000kg
- : 최고치(4,000kg), 최저치(1,000kg) 제외한 평균 값('19, '21, '22년) 3,000kg

(예시) 000수산업협동조합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_예시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함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예시)**

원장기장일자 : 2018-01-01 ~ 2022-12-31

발행일자: 2024-08-08

| 위탁인코드    | 위탁인명 | 선략명 | 위판일자       | 어종코드     | 어종명 | 수량  | 중량    | 금액         |
|----------|------|-----|------------|----------|-----|-----|-------|------------|
| 00000000 | 예시   |     | 2018-07-10 | 00000000 | A   | 1.0 | 500   | 11,000,000 |
|          |      |     | 2018-08-11 |          | A   | 1.0 | 500   | 11,000,000 |
|          |      |     | 2018-07-12 |          | A   | 1.0 | 1,500 | 33,000,000 |
|          |      |     | 2019-08-13 |          | A   | 1.0 | 1,500 | 33,000,000 |
|          |      |     | 2020-07-14 |          | A   | 1.0 | 2,000 | 44,000,000 |
|          |      |     | 2020-08-15 |          | A   | 1.0 | 2,000 | 44,000,000 |
|          |      |     | 2021-07-16 |          | A   | 1.0 | 2,500 | 55,000,000 |
|          |      |     | 2022-08-17 |          | A   | 1.0 | 3,500 | 77,000,000 |

(수협로그) 000수산업협동조합

출력자 : 000

발행일시 2024-0-00 00:00

- (예시 2: 산출 불가한 경우) 양식어업권 보유 어업인, B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직전 5개년 판매량 증빙
- 품목명과 물량(중량)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평균생산량 산출 불가
  - 직전 5개년(18~22년)간 세금계산서에서 지급 대상 품목명(B) 확인은 가능하지만, 물량이 아닌 판매금액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여 평균생산량 산출 불가

(예시) 세금계산서\_예시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개정 2021. 10. 28.>

책 번호  권  호   
 일련 번호  -

###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         |                   |    |             |       |           |           |             |    |    |    |    |    |    |    |    |         |  |
|------|---------|-------------------|----|-------------|-------|-----------|-----------|-------------|----|----|----|----|----|----|----|----|---------|--|
| 공급자  | 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             |       | 공급번호      |           |             |    |    |    |    |    |    |    |    |         |  |
|      | 상호(법인명) | 예시 수산             |    | 성명<br>(대표자) | 예시    | 상호(법인명)   | 예시 마트     | 성명<br>(대표자) | 예시 |    |    |    |    |    |    |    |         |  |
|      | 사업장 주소  |                   |    |             |       | 사업장 주소    |           |             |    |    |    |    |    |    |    |    |         |  |
|      | 업태      | 어업                | 종목 | B품목양식       |       | 업태        |           |             |    |    |    |    |    |    |    |    |         |  |
| 작성   | 공급가액    |                   |    |             | 세액    |           |           |             | 비고 |    |    |    |    |    |    |    |         |  |
| 연월일  | 빈칸      | 수조                | 천백 | 십억          | 천백    | 십만        | 천백        | 십일          | 천백 | 십억 | 천백 | 십만 | 천백 | 십일 | 천백 | 십억 | 1000000 |  |
| 월일   | 품목      |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 세액          | 비고 |    |    |    |    |    |    |    |         |  |
|      | B품목     |                   |    | 1           |       | 1,000,000 |           | 100,000     |    |    |    |    |    |    |    |    |         |  |
| 합계금액 |         | 현금                | 수표 | 어음          | 외상미수금 |           | 이 금액을 영수함 |             |    |    |    |    |    |    |    |    |         |  |

210mm×148.5mm (인쇄용지(특급) 34g/m<sup>2</sup>)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5. 증빙자료 관련 사항



④ 2023년 판매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 ✓ 수협이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가리비 혹은 전복)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 인정,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예시) 000수산업협동조합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_예시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함

### 위탁인별/일자별/어종별 판매내역

원장기장일자 : 2023-01-01 ~ 2023-12-31

발행일자: 2024-00-00

| 위탁인코드 | 위탁인명 | 선박명 | 위판일자 | 어종코드 | 어종명 | 수량 | 중량 | 금액 |
|-------|------|-----|------|------|-----|----|----|----|
|       |      |     |      |      |     |    |    |    |

(수협로그) 000수산업협동조합

출력자 : 000

발행일시 2024-0-00 00:00

- ✓ 2023년 이전 지원대상품목의 수산종자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도 출하 입증 필요
- ✓ 지원대상품목의 2023년도 계약 생산 및 판매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예시) 유통업체와 어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의 2023년도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증명 서류에 품목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허가 내용이 해당품목으로 특정된 경우나 기타 증빙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로 증명할 경우, 동 자료만으로 해당품목 생산·판매 확인이 어려울 때는 품목확인이 가능한 입식신고서 등 타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증명 가능
-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식 시점 이후 전부 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시) ‘패류양식’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품목 (가리비, 전복) 확인 불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호 시행】

|                                     |                      |                |
|-------------------------------------|----------------------|----------------|
| 발급번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br>수입금액증명 | 처리기간<br>즉시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태                                  | 어업                   | 종목 <b>패류양식</b> |
| 사업장                                 |                      |                |
| (단위: 원)                             |                      |                |
| 과세기간                                |                      | 수입금액           |
| 분기                                  | 차지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접수번호                                |                      |                |
| 담당부서                                |                      | 년 월 일          |
| 담당자                                 |                      | 세무서장 (인)       |
| 연락처                                 |                      |                |

자료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예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를 통한 추가 증명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시) <개정 2020. 8. 20.>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별첨)

|               |                                  |                    |            |        |       |               |            |              |
|---------------|----------------------------------|--------------------|------------|--------|-------|---------------|------------|--------------|
| 신고인           | 성명(한글)<br>(한자)                   | 생년월일               |            |        |       |               |            |              |
|               | 주소                               | (휴대폰)<br>(전화번호)    |            |        |       |               |            |              |
| 어업권자·양식업권자    | 성명(한글)<br>(한자)                   | 생년월일               |            |        |       |               |            |              |
| 영양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어업의 종류        | 시설방법 또는 양식방법                     |                    |            |        |       |               |            |              |
| 어업권·양식업권 현황   | 면허(신고)허가번호                       | 제 호                |            |        |       |               |            |              |
|               | 면허(신고)허가면적 (ha, m <sup>2</sup> ) | 어장 위치              |            |        |       |               |            |              |
| 구분            | 품종별<br>계                         | 크기(cm·g)<br>수량(kg) | 마리 수       | 입식 장소  | 입식 일자 |               |            |              |
| 입식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수산종자 구입처                         |                    |            |        |       |               |            |              |
| 구분            | 품종별<br>계                         | 입식<br>년도           | 크기<br>(cm) | 수량(kg) | 마리 수  | 판매일자<br>(월·일) | 금액<br>(천원) | 수량<br>(마리 수) |
| 출하(판매) 또는 폐사등 | 전복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사료구입<br>(확보)  | 구입(확보)일자                         | 구입(확보)지            | 전화번호       | 사료명    | 수량    | 구입일자          |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 안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를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원부서 | 재무팀 또는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리 세무 제 1부 | 수수료<br>발음 |
|-----|------------------------------|-----------|

210mm×297mm(복합지 80g/㎡)

자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④1 협정발효일 이전의 생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 ✓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전자 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제외)이 있습니다.
-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로 생산 사실 증빙이 가능합니다.

④② 양식업의 경우 종자 및 사료 구입 증빙서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정성 조사 결과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 양식 수산물 '생산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예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결과, 종자 및 사료 구입 전자 계산서(영세울) 등

✓ 따라서 FTA 협정일 이전의 생산증빙은 가능하지만, 2023년 '판매증빙'으로는 인정 불가합니다.

④③ 수기로 작성된 일반계산서를 비롯한 개인상회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실적확인 서류를 판매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 객관적·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자료는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④④ 농수협, 대형마트 등 대표의 직인이 있는 수기 확인서를 판매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 객관적·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자료는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④⑤ 생산자단체(사단법인) 대표의 직인이 있는 수기 확인서를 판매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 수기로 작성된 확인서는 판매증빙으로 인정 불가하며, 품목 및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협이 아닌 단체 혹은 협회장의 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상에 확인자로 서명 가능

## 6. 행정처분 관련 사항

④6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어업인은 모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 제한은 2023년도의 처분으로 한정하며,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④7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경고’도 포함되는지?

- ✓ 경고는 어업 등 행정처분에 속하지만, 직불금 신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보다는 경미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④8 어업인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지?

- ✓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④9 2023년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인 경우 적발일, 고지일, 행정처분일 중 어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 ✓ 행정 처분일을 기준으로 함. 즉 2023년 중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처분을 받은 자’로 간주합니다.  
 (예시) ‘22.9.1. 적발되어 ’22.12.1.부터 ’23.1.31.까지 어업정지를 받은 경우  
 ⇒ ’23.1.1.~1.31.까지 어업정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신청자격 제한

⑤0 2023년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직불금 신청 및 지급기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급대상인지?

- ✓ 해당연도에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 다만, 이후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법 제21조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관련, 수산업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사면을 받은 어업인의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 사면을 받은 어업인은 지급 가능합니다.

㉕ 다수의 어장을 보유한 어업인의 경우, 그 중 1개 어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어장을 제외한 어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가능한지?

✓ 지침 상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신청대상자로 규정합니다.

✓ 따라서 처분을 받은 어장의 면적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어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 지자체 담당자 확인 사항



㉓ 현지조사 후 적격여부 판정을 위한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어촌계장 포함 가능한지?

- ✓ 어촌계장은 생산자로서 본 사업의 신청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지침 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협 임직원, 어업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이 보다 적합한 심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㉔ 품목이 '패류'로 기재된 경우 판매증빙으로 인정 가능한지?

- ✓ 해당 품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전자계산서, 양식일지, 입식 신고 등)와 지자체 현지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㉕ 지분권별로 공동 소유하는 어업권의 경우 어떻게 신청되어야 하는지?

- ✓ 지분권자(혹은 행사계약자) 개별로 신청을 받아야 하며, 지분권자(혹은 행사계약자) 별로 자격,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8. 2024년 지원대상품목별 주요사항



### ㉞ 가리비·전복 관련 주요사항

#### ※ 가리비·전복 양식 생산 및 판매 증빙

- ✓ 2023년 생산·판매 증빙 서류에 품목명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증빙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로 증명할 경우, 동 자료만으로 해당품목 생산·판매 확인이 어려울 때는 품목 확인이 가능한 입식신고서 등 타 자료를 함께 제출해서 증명 가능
  - (입식신고서로 증빙하는 경우) 종자 입식 이후 출하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식 시점 이후 전부 폐사로 인한 지원금·보험금 등을 수령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복합양식, 협동양식 어업권을 보유한 신청자의 경우) 다품목 생산이 가능한 복합양식, 협동양식 어업권을 보유한 경우, 실제로 양식어장에서 지금 대상 품목인 가리비 혹은 전복의 생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 및 증명되어야 함
- ✓ 평균생산량이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양식법으로 인해 평균생산량 적용이 곤란한 경우, 양식어업인은 본인이 직접 증빙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직전 5년간(2018~2022년)의 연도별 생산량이 증빙되어야 하며, 이때 최대 및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생산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직불금 지급

#### ※ 가리비·전복 직불금 지급대상

- ✓ 품목이 '패류'로 기재된 경우 가리비·전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전자계산서, 양식 일지)와 지자체 현지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보완이 필요합니다.

#### ※ 가리비·전복 양식장 지분권

- ✓ 가리비·전복 생산자가 양식장(허가, 면허 등)을 공동 소유 시, 지분권자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 지자체는 현지조사 시 지분권 및 행사계약자가 신청한 내용이 어업권, 행사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개별적으로 신청된 면적이 어업권상의 전체 면적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 확인 필요
- ✓ 개별 어업자가 다수의 어장을 소유하거나, 다수 어장에서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어업인의 직불금 지급액의 합은 3,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FTA이행지원센터

<http://fta.kmi.re.kr>  
콜센터 1644-4116